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7호

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

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-2882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‘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4년 2월 1일
서울특별시

1. 대상지(변경)

구 분	자치구	명 칭(가칭)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기정	강북구	미아동 791-2882	미아동 791-2882번지 일대	140,696㎡	·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미아동 791-2882번지 일대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비계획 수립 등을 위한 구역계 변경 · 증가(△3,090㎡) 및 감소(▽2,583㎡)면적 반영
변경	강북구	미아동 791-2882	미아동 791-2882번지 일대	141,203㎡	

2. 권리산정기준일(변경)

구 분	권리산정기준일	면 적(㎡)	비 고
기정	2022. 1. 28.	140,696㎡	· 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없음 · 구역계 변경에 따라 편입된 필지에 대하여 추가 적용 · 제척된 필지는 해제
변경	2022. 1. 28.(기존구역) 2024. 2. 1.(편입구역)	141,203㎡	

3. 지정사유(변경 없음)

- 기존 세대수가 증가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의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토지의 분할, 단독·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,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, 건축물의 신축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.

4.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(변경 없음)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.
 - 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,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.

5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6. 안내사항

- 고시 관련한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(☎02-2133-7203) 및 강북구청 주거정비과(☎02-901-255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※ 본 고시는 향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, 건축물의 신축,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.
 - ※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업할 수 없음.

■ 관계도면

